

개발부담금 납부 독촉장 및 과태료(증가산금)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『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』 제21조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장 발부 및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24조에 의한 과태료(증가산금)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(이사감)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년 11월 09일

원 주 시 장



제 목 :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장 및 과태료(증가산금) 통지 공시송달

공고 기간 : 2009. 11. 09. ~ 2009. 11. 24.

체납 내역

납 부 의 무 자	대 상 토 지	체납액(원)			비 고
		개발부담금	과태료	계	
(주)우성피엠	원주시 소초면	25,119,280	1,110,000	26,229,329	
(주)진흥아이앤디	홍양리 49-1외 4	36,581,290	1,110,000	37,691,290	

게시 장소 : 전국 시·군·구청 게시판 및 원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

유의 사항 :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미납 시 완납일까지 월1.2%의 증가산금이 가산되며, 『국세징수법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기 타 :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지적과(033-737-36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